CJ 프레시웨이

협력사 행동규범

CJ 프레시웨이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버전. 2026-02 개정

적용. 상품본부

1. 개요와 전제

1) 본 행동규범은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이하 “FW”라 합니다)와 협력사(이하에서 정의됨)가 성공적으로 동반 성장하기 위하여, 협력사의 적법하고 윤리적인 업무 수행 및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윤리경영, 인권경영, 안전경영, 환경경영 4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하위 협력사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본 행동규범의 적용대상이 되는 ‘협력사’란 FW 와 ‘상품거래 기본계약서’ 또는 ‘제조위탁거래 기본계약서’ (두 계약서를 합하여 “기본계약서”라 합니다)를 체결하고 NB 및 PB 상품을 회사에 제조 및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3) 본 행동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본계약서 및 FW 의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준용하며, 이에 정하고 있지 않는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 상 정의된 바에 의합니다.

4) 본 행동규범은 FW 의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규정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며, 본 행동규범과 관련한 사항은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 또는 해당 본부의 컴플라이언스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본 행동규범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요와 전제
2. 윤리 경영
3. 인권 경영
4. 안전 경영
5. 환경 경영
6. 시행 및 개정에 대한 사항

2. 윤리 경영

협력사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및 해외 현지의 제반 법률과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사의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반부패

협력사는 FW 를 포함한 모든 계약 상대방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관련자에게 또는 그런 관련자로부터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 유·무형의 재산상 이득 또는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 3 자를 이용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거래 청렴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거래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위반자에게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반부패 관련 법규의 준수를 항상 실천하여야 합니다.

2) 정보 공개

협력사는 정보 공개 관련법과 규정, 업계 관행에 근거하여 경영활동과 성과, 재무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하여 합니다. 또한, 주주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반 법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공정거래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및 현지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제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쟁사의 가격, 제품, 판매 조건, 수익 또는 마진, 시장 점유율, 유통 방식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담합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식 또는 비공식 협정이나 협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FW 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합니다.

5) 개인정보보호

협력사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 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하여야 합니다.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등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취급 및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3. 인권 경영

협력사는 계약직, 임시근로자, 인턴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1) 자발적 근로

협력사는 근로자가 강제 노동, 착취 노동 및 비자발적인 노동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 취업 비자 등의 양도를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 조건을 문서화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채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근로시간

협력사는 근로 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규정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아동 · 미성년 근로자 보호

협력사는 어떠한 제조 공정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동은 15 세,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 고용할 수는 있으나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초과근무,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인 최저 임금, 초과 근무시간 보상,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연장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기준은 급여내역서나 유사한 서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내역서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학대, 체벌, 정신적 · 육체적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6) 차별 금지

협력사는 채용, 승진, 보상, 배치, 복리후생, 교육 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결혼 여부 등에 따른 불법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장에 계속)

4. 안전 경영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제일문화를 정착하고 잠재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1) 산업 안전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잠재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조치는 설계, 엔지니어링, 예방정비 등을 통한 공학적 개선, 안전한 작업절차 마련, 지속적인 안전훈련 및 교육, 적합한 보호구지급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비상사태 대비

협력사는 자연재해, 감염병, 업무현장 사고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대응 절차를 갖추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근로자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재해 및 질병관리

협력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체노동 및 작업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적절한 휴식 제공, 인력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하서는 근로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교육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 계속)

5. 환경 경영

협력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운영(운영, 소싱, 제조, 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위험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폐기물 등 환경 오염을 규제하는 제반 환경 법규 및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등 환경 관련 국제조약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환경 인허가 및 보고

협력사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필수 환경 인허가사항을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환경 오염 방지

협력사는 생산·정비 공정 및 시설의 효율화,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폐기물, 폐수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 지속가능한 원재료 조달

협력사는 식품 원재료 조달 과정 전반에서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삼림·수자원 등 주요 천연자원은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사업 수행 시 지속가능한 원재료를 우선적으로 조달함으로써 환경 영향 저감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 기여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 계속)

6. 시행 및 개정에 대한 사항

1) 본 행동규범은 2026 년 2 월 9 일자로 시행하며, 시행일자 이후 협력사와 기본계약서 체결 시에는 협력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동의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2) 본 행동규범의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과 해당 본부는 협의하여 최소 9 월 30 일전까지는 개정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확정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차기 기본계약서 체결시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본 행동규범은 회사의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규정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의 기안과 준법지원인의 결정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은 개정 내용을 즉시 사내에 전파하여야 합니다.

4) 각 임직원은 본 행동규범의 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 또는 해당 본부의 컴플라이언스 코디네이터(기획팀장)에게 송부 바랍니다.

(끝)